

다음은 勤勞者의 企業經營參與權의

利益均霑權 新政 問題에 關하여 意見은

다음과 같고 있습니다.

勤勞者의 經營參加權은 現行 憲法에서

採択된 것이 아니라 勤勞者의 利益均霑權

의 保障을 위한 것이 아니라 勤勞者의 利益均霑權

은 現行 憲法에서 採択된 것이 아니라 1962

년의 第5次 改正 憲法에서 削除된 바 있음

~~의 保障을 위한 것이 아니라~~

勤勞者의 利益均霑權을 위한 것이 아니라 勤勞者의 利益均霑權

~~經營參加權을 變更하지는 具南學은~~

勤勞者의 參與意識을 高취하고 所願

感은 實效 있게 方便 協助이 잘 이루어

지게 하여 生活性을 向上 시켜 方便向

의 人格的 平等을 保障 하였고,

利益均霑權의 規定은 均等으로 所得

分配을 社會正義를 實現 하는 ~~의~~ 功

當否의 標準을 向上 시키는 功

것은 前提로 維新黨과 新韓民黨

의 改憲案草案이 規定되야 있었읍니다.

그러나 이 兩案은 우리의 現狀과

過去의 經濟狀況으로 보아 实效性이 疑問視

되어, 經營者加稅을 許容하는 경우

企業秘密이 누설되어 企業經營은 어렵게

한 우려가 있고, 勤勞權의 要求條件이

만약의 勞使地位이 激化의 原因이 되어,

利害均~~均~~權利의 許可하는 경우 利害

面의 爲리한 勞使地位이 우려되고,

그 結果의 爲리가 國家의 責任을 共同한데 있다. 然하면

自由經濟體制의 原則에서 볼 때에

勤勞權의 地位^{이것은 國家에 대한}向上은 勞動三權의 保障

의 保障 爲한 社會保障制度 내지 國家의

經濟政策에 依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

마땅 하^고 이 憲法改正案 에서는 勤勞^{노동의 經濟參加權과 利害均權을 인정하지 아니한 爲한}

爲의 生存權 保障은 爲한 最低 爲合의

憲法, 勞動三權의 實質的 保障은 爲한

개정^{조항은} 제 119 조^하에^의 규정^은이다,

經濟科^에 登記 專別規定^의 이 案法

改正案 第 119 條^에의 登記 所得 分配

의 維持 規定^은이 問題^를 解決

을 行^하였^습니다.